

2026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안내

I 주거안정 장학 소개

1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 한도 범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1학기 3~6월 지원, 2학기 9~12월 지원(각 4개월)

※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하계 7~8월, 동계 1~2월)에도 지원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하며
1학기는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는 매년 9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함

2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해당 학기 조회된 부모의 주소정보가 학생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일 기준 주소

정보와 다른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일 기준 주소정보로 변경 가능(단,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부모의 주민등록표(주소변동사항포함) 제출 필수)(접수문의: ☎ 1599-2000)

<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

학생 소속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원거리 미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거리 인정

- (광역 교통권 이내) 각 권역별 범위 이내의 지역 간에는 원거리 인정 불가
- (광역 교통권 이외) 각 권역별 범위 외 지역 간에는 시·군을 기준으로 구분
 - 시: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군: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 광역교통권 권역별 범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로 함
(단, 인천광역시의 경우 옹진군 전지역 및 강화군 일부 등 도서지역 제외)

권역별	범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 단, 원거리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량 또는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부모 거주 등) 학생이 대학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대학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이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되어 탈락되는 경우, 대학의 선발결과 정정 방식으로 결과 정정 가능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구분	성적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 산출(백점 환산 점수)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장학생 선발(부산대학교 자체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고, 기한 내 장학생 서약서 제출을 완료한 재학생
 - (1학기) 4월말, (2학기) 10월 말
- 구간 별 점수 산정
 - 우선선발대상자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장애인학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구간 별 점수 산정 표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	차상위
점수	5	4

다자녀 여부	Y	N
점수	5	4

성적 (평균평점)	4.5	4.4	4.3	4.2	4.1	4	3.9	3.8	3.7	3.6	3.5	3.4	3.3	3.2	3.1	3
점수	10	9.8	9.6	9.4	9.2	9	8.8	8.6	8.4	8.2	8	7.8	7.6	7.4	7.2	7

※ 동점자 처리 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 다자녀 여부, 성적(평균 평점), 이수학점, 학년 낮은 순

□ 지급 대상

- 부산대학교 주거안정장학금 자체선발기준에 근거하여 선발이 완료된 장학생
- 재단의 선발 결과에 대한 대학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완료된 자 중 해당 학기 사용한 주거비용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완료한 장학생
 - ※ 단, 매학기 최초 20만 원(3, 9월분) 지원 시에는 별도 지급 요청 필요 없음
 - 단, 지급 요청서 작성 이전에 부정청구 및 수급 해당 시 환수 이행 등에 관한 장학생 서약서 제출 필수(최초 20만 원 정액지원 포함)
 - 장학생 서약서 및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생이 작성 및 제출

학생 청구 방법

● (홈페이지) 장학생 서약서 제출 및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 방법

- (장학생 서약서 제출) 로그인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장학생 서약서 제출] 버튼 클릭
- (지급요청서 작성) 로그인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작성] 버튼 클릭

II

주거안정장학금 일정 및 절차

1

26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 추진 일정

내 용		일정	
'26년도 사업참여 신청	(대 학) 2026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25. 10. 15.(수) ~ '25. 11. 5.(수)	
사업 계획	(재단)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수립·시행	'26. 2월 중	
'26년 1학기 신청	(학생)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등 모든 학적)	1차	'25. 11. 20. ~ 12. 26.
		2차	'26. 2. 3. ~ 3. 17.
	(학생)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 서류제출	1차	'25. 11. 20. ~ '26. 1. 2.
	(학생)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2차	'26. 2. 3. ~ 3. 24.
복지 자격 확인	(재단) 기초·차상위계층 본인 자격 보유 여부 확인	1차	'25. 11. 20. ~ 12. 27.
		2차	'26. 2. 3. ~ 3. 18.
장학생 심사	(대 학)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등록	'26. 2월 ~	
	(재단) 원거리 인정 여부 등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대학 정정	(대 학) 재단 최초 선발 결과에 대하여 선발 결과 확인 및 정정	'26. 4. 6. ~ 4. 15.	
선발 결과 통보	(학생)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대 학) 대학관리자포털 통해 확인	'26. 4. 22. ~	
대학별 예산배정	(재단) '26년 1학기 대학별 선발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배정 및 교부	'26. 4. 22. ~	
'26년 1학기 장학금 지급	(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작성 및 장학금 지급 요청(→대 학)	'26. 4~9월 중 (지급 일정은 대학별 자체 운영)	
	(대 학)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장학금 학생 계좌 지급		
'26년 1학기 운영결과 제출	(대 학) '26년 1학기 지원 후 집행 결과 등 운영 결과 제출(→재단)	'26. 8~9월	
사업 계획	(재단)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수립·시행	'26. 8월 중	
'26년 2학기 신청	(학생)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등 모든 학적)	'26년 2학기 통합신청 일정 고려하여 2학기 시행계획에 반영 예정	
	(학생)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 서류제출		
	(학생)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복지 자격 확인	(재단)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여부 확인		
장학생 심사	(대 학)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등록		
	(재단) 원거리 통학 인정 여부 등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대학 정정	(대 학) 재단 최초 선발 결과에 대하여 선발 결과 확인 및 정정		
선발 결과 통보	(학생)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대 학) 대학관리자포털 통해 확인		
대학별 예산배정	(재단) '26년 2학기 대학별 선발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배정 및 교부		
'26년 2학기 장학금 지급	(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작성 및 장학금 지급 요청(→대 학)		
	(대 학)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장학금 학생 계좌 지급		
'26년 2학기 운영결과 제출	(대 학) '26년 2학기 지원 후 집행 결과 등 운영 결과 제출(→재단) ※ 2학기 결과 보고 시에는 운영비 연간 집행 결과보고서 포함하여 제출 필수	'27. 2~3월	
'26년 사업 결과 보고	(재단) '26년도 연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 결과 보고(→교육부)	~ '27. 4. 30.	

※ 교육부 및 부서 간 협의에 따라 재단 내부 일정 변경 가능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사업 관련 업무협의 및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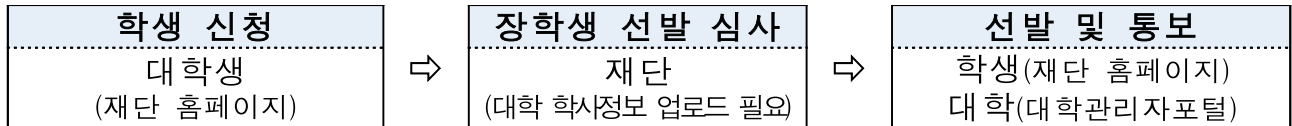
2

선발 절차

□ 개요

- 신청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을 재단의 선발기준에 따라 주거안정장학생으로 선발

【 주거안정장학생 선발 절차 】



3

장학금 신청 및 지원

□ 주거안정장학생 신청

- (신청 기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학기별 운영하며 계절학기는 별도 신청 없이 정규학기 선발자 중 계절학기 수강 시 지원
 - ※ 계절학기는 별도 신청기간이 없으므로 하계는 1학기, 동계는 2학기에 반드시 신청 필요
- (2학기 신청 기간) (1차) '26. 5. 22.(금) ~ '26. 6. 22.(월)
(2차) '26. 8. 12.(수) ~ '26. 9. 9.(수)
- (온라인 신청) 학생은 학기별 신청 기간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필요

학생 신청 방법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 주거안정장학금
- (모바일앱)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통합신청

- (지급 기준) 매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비용 지급
 - 학생의 지급 요청 및 대학의 지급은 월 단위로 실행하며, 잔여 한도가 발생하여도 다른 월에 이월하여 청구 또는 지급할 수 없음*
 - * (예시) 4월 주거비용 지출이 15만 원으로 월 한도 잔여가 5만 원 발생하여도, 5월분 지급 시 한도 증액 이월하여 25만 원 한도로 청구 및 지급 불가

※ 단, 1개월분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차료(1년치 월세 등) 등 선금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간의 월 환산 비용(1/n)을 매월 청구 가능

- 매학기 20만 원 정액 지원분(3, 9월)은 별도 지급 요청 필요 없음

○ (지급 주기)

학기	1차(3월분)	2차(4~6월분)	3차(7~8월분)	비고
1학기	5월 중순	7월 중순	9월 중순	7~8월은 계절학기 수강자만 지급
학기	1차(9월분)	2차(10~12월분)	3차(1~2월분)	비고
2학기	11월 중순	1월 중순	2월 말	1~2월은 계절학기 수강자만 지급

○ 기한 내 지급 요청서 제출하여야 장학금 지급 가능

학기	2차(4~6월분)	3차(7~8월분)	비고
1학기	7월 초	9월 초	7~8월은 계절학기 수강자만 지급
학기	2차(10~12월분)	3차(1~2월분)	비고
2학기	1월 초	2월 중순	1~2월은 계절학기 수강자만 지급

○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보조금(주거안정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 자격 관리(지급 제외 기준)

○ (학적변동) 학적 변동 시 반드시 학생과에 즉시 통보하고 학적 변동 월까지 장학금 지급 가능 예시) 4월 2일 휴학 시 3~4월 지급 가능

○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자(환불자)

○ 장학생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한 반환

□ 지급요청 시 유의 사항

○ 부정청구·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

○ 국내대학에 학적을 두고 국내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기간에는 지급 불가

- 장학생 선발 학기 내 국내 복귀하여 발생한 주거 관련 비용은 지원 가능

III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 및 승인

1

지원범위 및 기준 상세

- ▶ (지출 명의) 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만 지원 (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 ▶ (산정 기간)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지출 원인 발생 월(예: n월분 월세)과 무관)
- ▶ (기간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사후 지출의 해당월분(지출원인월) 인정
 - (사전 지출)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관리비 선급금*
 - *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단, 방학 기간 기숙사비를 학기 중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분도 선급금 인정 가능)
 - (사후 지출)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한 임차료(월세), 관리비의 지연 이체*
 - * 지연 이체: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
- ▶ (인정 지역)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동일 광역교통권·인접 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
 - * 단, 인정 지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발생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학소재지가 시·군지역으로 인접 시 또는 동일 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 필요성을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해당 학기 전부 온라인 수강하는 경우에는, 거주 지역에 대한 대학의 예외 인정 처리 불가)

□ 임차비용: 주거시설 임차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임차료) 당월 지출액 (* 청구 대상 월과 무관하게 지출일이 속한 월의 비용만 인정)
 - * 주택,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 단, 기숙사 등 선납하는 경우 '임차료 선급금'으로 입력 시, 과거 지출분 인정
- (임차보증금)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하여 당월분 ($\text{보증금} \times 0.04 \div 12$)
 - * (산정 예시) 보증금 1천만원인 경우, $1\text{천만원} \times 4\% \div 12\text{개월} = 33,333\text{원}$ 인정

□ 이자비용: 주거시설 임차·저당에 따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원금 제외)

- (주택 임차·저당 차입금 또는 월세 대출 이자상환액) 당월 이자상환액
 - * 단,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은 임차보증금 월환산차임과 중복지원 불가
 -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대출로서 용도(전·월세 보증금, 주택자금, 월세 마련 대출 등), 원금 및 이자가 구분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하며, 사인 간 채무(용도 불문)는 인정 불가
 - * 보증금에 본인부담금, 대출금이 섞여 있는 경우, ① 보증금 전액 입력(단, 보증금대출 이자비용 청구불가) 또는 ② 보증금 본인부담금 입력 + 대출 이자비용 청구 중 택 1

- 수선유지비: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수선재료* 구입비) 당월 지출한 수선재료 구입 비용
 - * 벽지, 장판, 변기, 욕조, 전선, 수도관, 가스배관, 창문, 방충망, 방범창 등
 -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 당월 설비·수리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
 - * 전기·가스·방수·도배공사 등 공사비 및 보일러·에어컨 설치비 등(단, 제품 구입비 불가)
- 수도광열비: 상·하수도, 냉난방 및 취사 등에 필요한 물·연료 비용
 - (물 공급비용) 상하수도, 공동수도, 급탕비*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
 - * 공동주택에서 온수 공급대가로 지불한 비용 (중앙 및 지역난방의 급탕비)
 - (연료비)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
- 공동주택관리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
 - * 단, 관리비를 선납하는 경우, '관리비 선금'으로 입력 시 과거 지출분 인정

2 장학생의 지급 요청

- 지급요청 방법
 -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에서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장학생 필수교육 이수
 - (장학생 서약서 제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범위 내의 지출에 대해서만 지급 요청서에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부정 청구 및 수급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에 대하여 서약서 제출
 - (지급 요청서 작성)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및 제출
 - (대상 기간) 월(month) 단위로 지출내역 작성 및 지급 요청하되, 각 지출 건의 실제 거래일자(이체일, 카드거래일 등)를 정확히 입력
 - ※ 지급 요청 및 대학의 지급이 완료된 '월(month)'은 20만 원 미만 지급 등 사유로 해당월분의 잔여 한도가 있더라도 추가지급 요청 불가(학생기준 월단위 마감)
 - (항목 선택) 지원범위인 임차비용, 이자비용, 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및 공동주택관리비 중 해당 항목 선택하여 해당월 지출분 입력

- (대상 금액) 월 지원한도(20만 원)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항목 및 금액을 반드시 전부 입력(※ 지급심사 시 지원 불가 항목 발생 대비)

- (서류 보관 및 소명) 지급 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 지급 요청서 작성 시기

- (1학기) 해당 월(4~8월) 직전일까지의 지출에 대하여 당월 작성 가능
- (2학기) 해당 월(10~2월) 직전일까지의 지출에 대하여 당월 작성 가능
 - ※ 지급 요청서 작성 및 소명 서류제출 등 세부 일정은 대학이 정한 바에 따름
 - ※ 계절학기는 계절학기 등록 및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대학이 등록한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하여 계절학기 기간의 지급 요청서 작성 가능

☐ 지급요청 시 유의 사항

- 장학금 수령 계좌 본인 명의 확인 필수 및 변경 필요시 홈페이지에서 변경
- 부정청구·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

< 지출항목별 소명 서류 기준 >

구분		소명 서류	비고
임차 비용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계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거주)확인서 등 · 계좌 입금내역 등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 계좌입금, 자동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계약서 상 임차인은 본인 또는 부모에 한하여 인정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계 증빙서류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입실(거주)확인서(기숙사 등) 등 · 계좌 입금내역 등 임차보증금 지급 증빙서류 - 계좌입금, 자동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타인명의 계약 임차지에 공동 거주하는 경우 관련 증빙 필요 (FAQ 43p 참조)
이자 비용	주택 임차 차입금	· 원금과 이자의 내역이 구분되는 상환 증빙서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서, 이자상환증명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 단, 월세 대출의 경우 대출용도가 확인되어야 함	·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이자 상환액은 임차보증금과 중복지원 불가
	주택 저당 차입금	· 원금과 이자의 내역이 구분되는 상환 증빙서류 - 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서, 이자상환증명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 차주(채무자)는 학생 본인에 한하여 인정
수선 유지비	수선 재료 구입비	· 수선재료 구입이 확인되는 지출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물품은 '계산서')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 구입한 수선재료 물품 사진	· 주거의 유지 및 수선에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 인정
	설비 수리 서비스	·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이 확인되는 지출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서비스는 '계산서')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 사진	· 제품 구입비는 지원 불가 (에어컨 수리비○ 에어컨 구입비X)
수도 광열비	물 공급	· 상하수도요금, 공동수도로, 물이용부담금 등 지출 서류 - 요금납부내역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은 본인 명의로 청구되지 않은 경우, 청구지 거주 확인을 위하여 학생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
	연료비	·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연료비 지출 서류 -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내역서(영수증) 등 - (등유, 연탄 등 연료구입)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연탄 등 면세품),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공동주택 관리비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세대별 청구되어 지출한 증빙서류 - 관리비 납부내역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1

장학금 반환

□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금 산정

-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해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 이후의 지원 금액만 반환 대상
- 단,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에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반환 대상 해당

□ 기타 사유

- 학생이 타 주거지원 사업*의 수혜로 인해 중복수혜한 장학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사업, 그 외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 (단, 국토부 주거급여는 제한 대상 제외)

- 학사운영 부실 등으로 인해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 장학생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 유의 사항

-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학생의 반환 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주거안정장학금 반환서약서)을 반드시 징구
- 중복수혜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학생의 장학금 포기 및 반환 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주거안정장학금 포기(반환)서약서)을 반드시 징구

□ 반환 방법(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반환)

주체	반환방법
학생→대학	•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서약서 또는 포기(반환) 서약서 작성 필요 • 소속 대학을 통해 반환
대학→재단	• 예산반환관리 메뉴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 재단에서 반환승인

* 가상계좌 생성 시 정확한 반환연도 및 교부금반환 구분을 선택하여 저장